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7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부승찬 · 장철민 · 김한규
이재강 · 추미애 · 진선미
김준형 · 김준혁 · 박지혜
권칠승 · 김영환 · 김남근
안태준 · 안도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현행법 제44조 등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등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2조 등에 따라 군 방첩정보, 군사보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일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상황임.

또한 「군사법원법」이 2026년 2월 5일부로 일부개정되어 군사경찰에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군사경찰이 모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을 가진 상황임.

따라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의 임명 권한 등을 규정한 제43조 및 제46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제44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군사법원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등).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범죄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제4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

조제2호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 또는 중전의 제46조제2호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리는 이 법 시행일에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에서 각각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44조제1호”를 “제44조”로 한다.

②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를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로 한다.

③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생략)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4. (생략)	제43조(군사법경찰관)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범죄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u>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u>	<u><삭 제></u>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u>「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u>	<u><삭 제></u>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생략) 2. <u>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u>	제46조(군사법경찰리)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 하는 사람</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